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 담당
- 발 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02)701-7687
- 일 자 : 2014. 3.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 제 목 : - 시민단체들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권고 요청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2014. 2. 1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은 요금을 미납할 경우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컸다. 신용사회에서 채권추심은 사기업이 감수해야하는 부담인데도 공적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마구 수집하여 지금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위험(risk)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기업이 채권추심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담보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만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첨부)를 제출하여 권고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중단해주시길 촉구한다.

2014년 3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1. 경과

-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
 - 2004년 KT에서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12년 7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 2014년 3월 6일 KT를 통해 1천2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또 유출된 사실이 보도됨.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음.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함. 2014년 3월 11일 이동통신사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실이 보도됨. 이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LG유플러스, KT 개인정보 각각 250만건, 7만6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된 것을 확인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
 - 2013. 7. 16.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위안번호: 59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32조의3(부정 가입 방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4. 2. 1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관련 연구

-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판례집 24-2상, 590 [위헌])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
 - 본인확인제는 ... 입법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함
- 심우민(2014)¹⁾은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사회적으로 유통 및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가급적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주목할 만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계기를 제공한 KCB(코리아 크레딧뷰로)와 가입자 정보를 유출당한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민간 사업자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개인

1) 심우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이슈와 논점 제81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

-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동통신 가입 때 본인확인을 했던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임
- 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은 통신 요금을 미납할 경우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큼. 신용사회에서 채권추심은 사기업이 감수해야하는 부담이며,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위험(risk)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함. 채권추심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담보로 하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함. 요금을 선납하는 선불폰 뿐만 아니라 후불폰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선납부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면 이동통신사는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음. 그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않을 수 있고 가입자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음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경향에 위배됨.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인하여 민간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져 왔음. 이런 경향과 역행하여 휴대전화 이용시 개인정보 수집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할 것임
- 돈을 받고 대포폰 개설을 권유 또는 알선, 중개하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본인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본인확인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단말기가 특정인과 직접 연계되지 않도록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야 함
-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음. 휴대전화 본인확인제가 도입되더라도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음.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피해를 양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범죄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발상임

-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특히 더 위험함. 본인확인기관은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 즉 내 취향이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은 수천 개의 제휴 및 위탁업체와 관계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신사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인확인’ 및 ‘주민등록번호수집’과 결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앱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정보들이 본인확인 정보와 결합한다면 더욱 끔찍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것임.
-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사회적으로 유통 및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를 줄이는 것임.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가급적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디자인이 요구됨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 폐지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이동통신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집은 채권추심의 목적이 강함. 채권추심은 사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임. 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 아닌 다른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강제하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의무화 법안은 범죄예방 등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확인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며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성을 안기는 것임

- 또한 국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법제화 폐지를 권고하기를 촉구함 <끝>